

**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**(제4조제2항 관련)

1. 표기방법

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“경고: ”라고 표시한 다음,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
나.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.

다.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.

2. 글자 및 그림의 크기

|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       | 글자 크기   | 그림 크기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300ml 이하            | 8pt 이상  | 8mm×8mm 이상   |
| 300ml 초과 500ml 이하   | 10pt 이상 | 10mm×10mm 이상 |
| 500ml 초과 1,000ml 이하 | 14pt 이상 | 12mm×12mm 이상 |
| 1,000ml 초과          | 16pt 이상 | 15mm×15mm 이상 |

비고: 1. 전면 코팅용기(캔류, 코팅 병 등)의 글자 크기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글자 크기의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.

2. 용량이 500ml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3. 색상

가. 경고문구

- 1)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: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(補色)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
- 2) 경고문구: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

나. 경고그림

- 1)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: 검은색
- 2)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: 흰색
- 3)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: 빨간색

4. 글자체: 고딕체

## 5. 표시위치

가.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.

나.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.